

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  
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 (제11조제2항제7호,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관련)

<p>① 별표 1의2 제1호 “국민취업지원제도”의 (1)을 이수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. 기초생활수급자</li> <li>2).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</li> <li>3). 북한이탈주민</li> <li>4). 삭제</li> <li>5). 신용회복지원자</li> <li>6). 결혼이민자</li> <li>7). 위기청소년</li> <li>8). 여성가장</li> <li>9). 건설일용직</li> <li>10). 장애인</li> <li>11). 삭제</li> <li>12). 니트(NEET)족</li> </ol>
<p>② 별표 1의2 제3호부터 제9호까지, 제17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</p>	
<p>③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26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</p>	
<p>④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</p>	
<p>⑤ 별표 1의2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</p>	